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1661호
- 발 의 자 : 서윤기 의원(찬성자 42명)
- 발의일자 : 2020년 7월 13일
- 회부일자 : 2020년 7월 14일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관람료 반환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- 나. 관람의 제한규정을 변경함(안 제7조제2호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5.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 및 이용제한에 따른 문화권 제약을 야기할 수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4조(관람료) ① ·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 | 제4조(관람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.</u> |
| 제7조(관람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 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 | 제7조(관람의 제한) ----- ----- <u>사람</u> 은 -----. |
| 1. (생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<u>2.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</u> | <u>2.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</u> |
| <u>3.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</u> | <u><삭 제></u> |
| 4. · 5. (생략) | 4. · 5. (현행과 같음) |
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¹⁾에 따라 인권주류화, 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, 협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²⁾를 도입·운영하고 있음³⁾.

1)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제8조(인권영향평가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- 인권담당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치법규 860개 (조례631, 규칙229)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① 차별 및 인권침해, ②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, ③ 시민참여 보장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자치법규 62개(조례 57, 규칙5) 96개 조항에서 개정사항을 도출하였음.

□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

| | I. 차별 및 인권침해 | II.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| III. 시민참여보장 |
|-------------|--|--|--|
| 개선점 | 인권친화적 행정기반 구축 | 문화권, 반환권, 구제권, 개인정보보호권 | 참여(참정)권, 평등권 |
| 인권침해 (제한분야) | 1.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 2.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조항 | 3.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.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(상위법에 근거한 시설 이용 감면(면제)의 올바른 적용여부) 5. 반환권 제약(공공시설 이용 사용 시 반환조항이 미비한 경우) 6. 구제권 제약(과태료 부과·징수의 법적근거 여부 및 구제절차 포함여부) 7.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| 8.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.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|

- 현행 조례 제8조와 제9조는 관람료와 무료관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, ‘최근 3년 시립박물관 관람료 반환 건수’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한 바, 대부분의 전시가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람료를 반환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.

2) 인권영향평가(HRIA) :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
법령, 계획, 정책,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

3)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(정무부시장 방침 제3호, '19.4.)

다만, 인권담당관에서는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중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분야에 포함된 '5. 반환권 제약에 따라 '관람료 반환'을 권고하였고, 자치법규의 공공시설의 이용 중 취소에 따른 반환과 관련하여 공통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안 제4조제3항 신설은 타당하나 실제로는 무료로 운영되므로 현실적인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과 인권위원회에서는 박물관의 건전한 관람문화를 저해하고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관람제한 대상자를 '술 또는 약물, 방해할 물품을 소지한 사람'으로 한정하지 않고 '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'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시민의 관람권을 보장하고자 하므로 안 제7조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서울시 각 실국에서는 시민참여 기반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개선하고 「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」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市 주요 정책 추진시 인권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.